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보험 현황

정인영 연구원

최근 미국에서는 미투운동(Me-Too Movement)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비한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EPLI)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동 보험은 직원이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등의 문제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임. 한편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보상 면책조항을 두고 있어, 강간 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최근 미국에서는 미투운동(Me-Too Movement)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2018년 1/4분기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성희롱 접수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0%, 60% 가량 증가함¹⁾
 - 2017년 10월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에 대한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성희롱·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캠페인이 직장인 등 일반인에게로 확산됨
 - CNBC(2017)²⁾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미국 성인 5명 중 1명(남성: 10%, 여성: 27%, 전체: 19%)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뉴욕시의 경우 지난 5월 직장 내 성희롱 사고에 관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은 “성희롱 방지 조례안(Stop Sexual Harassment in New York City Act)”을 통과시키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함³⁾
 - 동 조례안에는 성폭력 신고제도 강화, 강제적인 성희롱 피해 중재 금지, 피해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합의 금지, 15인 이상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Variety(2018. 6. 18), “‘Weinstein Effect’ Leads to Jump in Sexual Harassment Complaints”

2) CNBC(2017. 12. 19), “One-fifth of American adults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at work, CNBC survey says”

3) Business Insurance(2018. 5. 11), “NYC mayor signs anti-sexual harassment package into law”

■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비한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EPLI)⁴⁾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은 직원이 성희롱 등의 문제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과 더불어 합의나 소송 판결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상품임
 - 동 보험은 성희롱 외에도 부당해고, 차별대우, 사용자 보복행위, 근로자에 대한 허위 고용정보 제공, 부당 채용거부 및 승진거부, 명예훼손, 사생활권 침해 등의 고용행위 관련 위험을 담보함
 - 한편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사용자의 고용 관련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노동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과 구별됨
- MarketStance(2017)에 따르면 2016년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보험료 규모는 22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9년까지 2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⁵⁾
 -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약 41%가 성희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됨

■ 동 보험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보상 면책조항을 두고 있고, 강간 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논란이 있음

-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성희롱’의 범주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음
 - 고용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명시된 성희롱의 범주는 ① 원하지 않은 성적 제의, ② 성적 특혜요구나 기타 성적인 성질을 가지는 언어적·시각적·신체적 행위, ③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④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⑤ 개인에게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⁶⁾
 - 즉, 기본적으로 비물리적 성희롱으로 제한되며 강간 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성희롱·성폭행 혐의로 18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웨인스타인 컴퍼니는 동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보험회사는 약관상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⁷⁾
 - Chubb, National Union 보험회사 등은 웨인스타인의 강간과 성희롱 혐의를 고의적이며 매우 심각하고 유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변론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함⁸⁾ **kiri**

4) 국내에서도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음
 5) The Washington Post(2017. 11. 3), “More companies are buying insurance to cover executives who sexually harass employees”
 6) MARIE-FRANCE GELOT(2018. 2), “Sexual Harassment - Is your company exposed?”, LOCKTON
 7) Insurance Business(2018. 7. 30), “Weinstein’s tussle with insurers rages on”; MailOnline(2018. 7. 29), “Harvey Weinstein’s insurance companies argue they should not have to pay producer’s legal fees during his sexual assault trial”
 8) THE STAR(2018. 7. 29), “Harvey Weinstein’s insurers balk at paying legal bills in rape and sexual harassment cases”